

**제2877호**  
**2021.11. 5.**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
 편집인 :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 
 전화 : 3396-4951  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|   |         |
|---|---------|
| 선 | 기 관 의 장 |
| 람 |         |

# 구 보

●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2021-832 :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.....      | 2 |
| 제2021-834 :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..... | 4 |

- 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 
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1 / FAX.(02)3396-9022/3  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 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|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공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


자 치 법 규

[입법예고]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832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1월 5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 「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현재 우리 구의 중·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☐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초등학생을 포함(안 제2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교육아동청소년과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판동), 전화:3396-4665, FAX:3396-8632, 메일: wsyseoul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**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개정안 1부.**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.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834호

이 조례 및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 
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 
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1월 5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폐지이유

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근거 법령인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폐지 후 그동안 기반시설부담금 집행 관리업무를 위해 유지해온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 및 관련 회계 폐지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참조: 도심재생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, 중구청(예관동), 문의전화 : 3396-5759, 팩스 : 3396-8777, 메일 : sh0518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2021- 호

##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(안)

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 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회계의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)** ①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「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채권·채무 등 모든 권리·의무는 서울특별시 중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2021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 중구 일반회계에 귀속한다.